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194개 추가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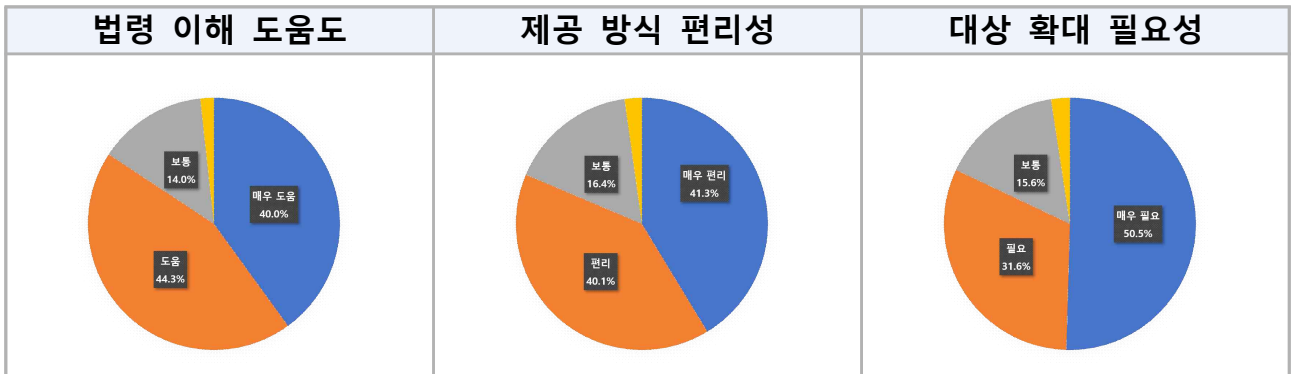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확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1: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참고 2: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 제공 법령 목록

담당 부서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책임자	팀 장	이상현	(044-200-6852)
		담당자	사무관	전병희	(044-200-6855)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대상 조문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 ⑤ (생략)

시각 콘텐츠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구급차 등 용도의 제한”

대상 조문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각 콘텐츠

구급차등 용도의 제한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법제처

* 이 콘텐츠는 2024년 9월 20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2**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 제공 법령 목록**

분야	대상 법령	콘텐츠 개수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6
	영유아보육법	1
	국민연금법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1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5
보건	의료법 시행규칙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3
농림·축산·수산	수산업법	31
	수산업법 시행령	5
	수산업법 시행규칙	4
	동물보호법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
합계		194